

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(제17조제2항 관련)

유족보상비는 제16조에 따른 장의비에 다음 표에 따른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제14조에 따른 의료비와 제15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피해등급	지급비율(%)
1등급	1,500.00
2등급	1,080.00
3등급	750.00
4등급	500.00
5등급	250.00

비고

피해등급 산정 전에 사망한 피해자의 피해등급은 1등급으로 본다.